사업방법서 별지

1. 보험의 종류 : 특종-상해/상해

2. 보험상품의 명칭 : 시민안전상해보험

3. 보험의 목적
피보험자의 신체를 보험의 목적으로 하며, 별도의 보험목적 보장시 해당 개별 특약에 보험의 목적을 명기한다.

4. 보험기간 및 보험료 납입주기에 관한 사항
가. 보험기간 : 1년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1년 이상 3년 이하의 장기계약 또는 1년 미만의 단기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나. 보험료 납입주기 : 일시납을 원칙으로 한다. 단, 단체계약 보험료분납 특별약관 적용계약의 경우 분할하여 납입할 수 있다.

5. 배당에 관한 사항 : 배당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6. 보험료 차등적용에 관한 사항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적용한다.

7. 기타
가. 보험료의 할인·할증에 관한 사항
이 보험의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 정한 바에 따라 적용한다.
나. 보험료 납입 최고(독촉) 기간 : 관계법령 및 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다. 보험료의 자동대출 납입 : 회사는 보험료의 자동대출 납입을 하지 않는다.
라. 보험료의 반환 : 관계법령 및 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마. 보험계약대출 : 회사는 보험계약대출을 하지 않는다.
바. 보험 종목의 변경 : 회사는 보험 종목의 변경을 승낙하지 않는다.
사. 질병을 원인으로 하는 사망을 특약으로 보장하는 경우 질병사망보험금의 한도는 개인당 2억원 이내로 하며, 보험만기는 80세를 초과할 수 없다.
아. 회사는 만 15세 미만자의 사망 보장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계약은 체결하지 않는다.
자. 계약의 제한 : 아래에 해당하는 자를 계약자 및 피보험자로 하는 계약에 한하여 판매한다.

(1) 계약자 : 지방자치단체(국토 내의 일부 지역을 구역으로 하고 그 구역 내의 모든 주민들을 구성원들로 하는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등을 말

하며, 지방자치법 제2조(지방자치단체의 종류)에서 정의하는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 시, 군, 구 등이 이에 해당) (2) 피보험자 :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안에 주소를 가진 주민 전체

차. 상해확장보장 추가특별약관(Ⅱ)의 적용 :

상해확장보장 추가특별약관(Ⅱ)의 ( )특별약관이란 아래의 특별약관을 말하며 해당 특별약관을 계약시 상해확장보장 추가특별약관(Ⅱ)을 의무부가한다.

특별약관 목록
<상해 관련 사망·후유장해 특약>
보통약관(24시간 상해사망·후유장해)
교통상해 사망 특별약관
교통상해 후유장해 특별약관
뺑소니 및 무보험차 상해사망 특별약관
뺑소니 및 무보험차 상해후유장해 특별약관
대중교통상해 사망 특별약관
대중교통상해 후유장해 특별약관
전세버스이용중 상해 사망 특별약관
전세버스이용중 상해 후유장해 특별약관
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 특별약관
폭발/화재/붕괴 상해후유장해 특별약관
익사사고 사망 특별약관
물놀이사고 사망 특별약관
강도상해 사망 특별약관
강도상해 후유장해 특별약관
헌혈후유증 특별약관
가스사고 상해 사망 특별약관
가스사고 상해 후유장해 특별약관
침몰사고 사망 특별약관
사회재난(감염병 제외) 사망 특별약관
사회재난(감염병 제외) 후유장해 특별약관
농기계사고 상해사망 특별약관
농기계사고 상해 후유장해 특별약관
24시간 상해 사망(교통상해 제외) 특별약관
24시간 상해 후유장해(교통상해 제외) 특별약관
강력범죄 사망 및 신체피해위험 특별약관
상해사망 장례지원금보장 특별약관
유상운송배달중 교통상해 사망 특별약관
유상운송배달중 교통상해 후유장해 특별약관

특별약관 목록
유상운송배달중 뺑소니 및 무보험차상해 사망 특별약관
유상운송배달중 뺑소니 및 무보험차상해 후유장해 특별약관
상해확장보상 특별약관
<상해 관련 진단 특약>
대중교통상해 부상치료비(택시포함) 특별약관
대중교통상해 부상치료비(택시제외) 특별약관
골절발생위로금 특별약관
골절발생위로금(Ⅱ) 특별약관
화상발생위로금 특별약관
유상운송배달중 교통상해 골절발생위로금 특별약관
유상운송배달중 교통상해 골절발생위로금(Ⅱ) 특별약관
<상해 관련 수술 특약>
골절수술위로금 특별약관
화상수술위로금 특별약관
상해 수술비용 특별약관
유상운송배달중 교통상해 골절수술위로금 특별약관
유상운송배달중 교통상해 화상수술위로금 특별약관
<상해 관련 기타 특약>
개 물림·부딪힘 사고 진단비 특별약관
전동보조기기(전동휠체어, 의료용스쿠터)사고 부상치료비 특별약관

카. 회사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사망보험금의 보험수익자가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 이외의 자(단체 또는 단체 대표자)로 지정되는 계약은 피보험자 사망보험금 지급시 피보험자 유족의 확인서가 필요함을 보험계약자에게 설명한다.

타. 장애인전용보험전환 특별약관 운영에 관한 사항

(1) 이 특약의 적용은 소득세법 및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근거한다.

(2) 이 특약은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보험계약에 한하여 부가할 수 있다.

1. 「소득세법 제59조의4(특별세액공제) 제1항 제2호」에 따라 보험료가 특별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보험
2. 모든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07조(장애인의 범위) 제1항」에서 규정한 장애인인 보험

(3) 기타

1. 관련법령이 개정 또는 폐지되는 경우 변경된 법령을 따른다.

2. 회사는 이 특약의 적용을 위해 알게 된 장애인 정보를 세액공제 목적으로만 활용하고, 다른 보험의 인수심사나 보험금 심사업무 및 요율산출 업무에는 활용하지 못한다.

파. 지방자치단체, 정부기관 및 준정부기관에서 운영하는 단체로 피보험자 세부명단 없이 그 단체에 소속된 특정대상자 전체를 피보험자로 하여 단체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회사는 계약자의 요청에 따라 피보험자 수의 변경에 따른 보험료 정산을 하지 않을 수 있다.